

[붙임]

##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전산보고 지원사업 공고

석유유통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주간단위 거래상황 기록부의 보고제도와 관련하여, 보고방법 중 전산보고를 희망하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8일

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

### 1. 목적

- 거래상황기록부의 보고방법 중 전산보고 방식으로 보고를 희망하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에 대한 중계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

### 2. 지원사업 개요

- 주관기관: 산업통상자원부(시행기관: 한국석유관리원)
- 운영기간: '21. 2. 8. (공고일) ~ 12. 31.  
\* 단, 지원예산 소진 시 지원사업 조기종료
- 지원대상: POS, ERP 등 전산장치를 보유하고 전산보고를 위한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가 가능한 주유소 및 면지역 소재 일반판매소
- 대상선정: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된 업소(약 300업소)

### 3. 지원 내용

-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전산보고 체계 구축 지원
  - POS 등 전산장치\*로부터 거래상황 보고자료를 생성·전송할 수 있는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을 최대 44만원/업소 지원(부가세 포함)  
\* 석유제품의 실거래 물량정보를 자동으로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(ERP)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(PO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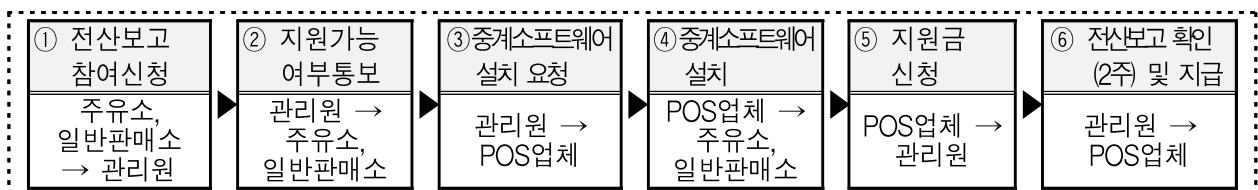
## 4. 신청자격

- 『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』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유판매업(주유소, 일반판매소)으로 등록(또는 신고)된 자
- POS 등 전산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, 중계소프트웨어 설치로 전산보고가 가능한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\*
  - \* 법령 개정('17.7.1시행)에 따라 주유소와 거래하고자 하는 면지역 소재 일반판매소
- 단,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협약 등으로 '21년 전산보고 지원사업 공고일 이전에 신규 신청하고 중계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
- 보고의무기간(2년) 경과 후 다른 보고방법으로 변경한 주유소 중 다시 전산보고를 하기 위해 중계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한 주유소

## 5. 신청 및 지원 절차

- (참여신청)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신청서(별지서식 1호)와 함께 관련 서류를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제출
- 정유사 및 대리점 직영, 농협 주유소, 농협 일반판매소, 법인 등은 본사에서 일괄신청 가능
- 관리원에서 신청서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주유소 등에 통보
- (중계소프트웨어 설치) 사용 중인 POS의 납품업체 또는 현재 유지 보수업체를 통해 중계소프트웨어 설치
- (전산보고) 중계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매주 전산보고 수행
  - 설치 후 2주 이상 전산보고를 정상적으로 수행 확인(점수절차)
- (지원금 신청 및 지급) POS업체에서 관리원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(별지서식 3호)을 하고 관리원은 신청 업체의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확인(점수) 후 지원금을 POS업체에 지급

### <전산보고 지원사업 절차>



## 6. 신청 기간 및 방법

□ 신청 기간: 2021. 2. 8.(공고일) ~ 12. 31.

\* 단, 지원예산 소진 시 지원사업 조기 종료

- 한국석유관리원에 접수된 일자를 기준(선착순)으로 중계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원하며,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

□ 신청 방법

- 인터넷: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시스템 홈페이지(www.oilreport.or.kr)
- FAX: 070-4850-8255 (문의: 1577-7055)
- 우편: (우) 13539,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,  
한국석유관리원 수급처 수급정보팀

□ 신청 서류

-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(별지서식 1호)
-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석유사업자 의무사항 이행각서(별지서식 2호)

## 7. 전산보고 참여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의 의무이행 사항

- 지원사업 참여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설치 후 2년간 전산보고 방식을 유지하여야 함
- 설치업체는 설치 후 1년간 전산보고용 중계소프트웨어에 대한 무상 유지보수 지원
- 지원사업 참여 석유사업자가 2년 이내에 타보고 방법으로 변경한 경우, 전산보고 지원사업 재참여 시 설치비용은 사업자 부담

## 8. 문의처

□ 한국석유관리원 수급보고안내센터(☎ 1577-7055)

- <별지서식> 1.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
2.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석유사업자 의무사항 이행각서 1부  
3.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지원금 지급요청서 1부



## 전산보고 지원사업 참여 석유사업자 의무사항 이행각서

\_\_\_\_\_ {  주유소  
 일반판매소 } (이하 '참여대상 사업자')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전산보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산업통상자원부(시행기관: 한국석유관리원)로부터 중계 소프트웨어(이하 '미들웨어') 설치(비용)를 지원받으며, 참여대상 사업자의 운영에 관한 이행각서(이하 '각서')를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각서는 전산보고 참여를 위해 중계소프트웨어 설치를 지원받는 참여대상 사업자의 사후관리(의무이행 사항 등)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일반기준)** 참여대상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미들웨어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은 『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(고시)』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지침 이외의 사항은 한국석유관리원(이하 '관리원') 유권해석에 따른다.

**제3조(허위설치 금지)** 참여대상 사업자는 중계소프트웨어 설치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에게 부적정한 시공을 요구하지 않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동의한다.

**제4조(설치 확인협조)** 참여대상 사업자는 중계소프트웨어 설치 후 설치내역에 대한 세부설명 및 자료제공 등 관리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의무이행 사항)** 중계소프트웨어 설치지원을 받은 참여대상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한다.

1. 전산보고를 2년간 유지하여야 하며, 2년 이내 타 보고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지원 사업 재참여 시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.
2.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새로운 승계자에게 전산보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수 인계 하여야 한다.
3. 중계소프트웨어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중계소프트웨어 운영현황에 대한 관리원의 지도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라이선스 회수)** 참여대상 사업자 또는 승계인이 제5조를 위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관리원은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에 지원한 중계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회수할 수 있다.

**제7조(유효기간)** 이 각서의 유효기간은 중계소프트웨어 설치지원을 받은 날(관리원에서 설치 확인한 날)로부터 2년으로 한다.

2021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일

신 청 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 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